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2022. 11. 10(목)

면정회보

[제 2022- 21호]

양보면

목 차

[총무부서]

- 2022 하동군 이장한마음대회 추진계획 알림 1
-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범군민지원협의회 출범식 개최 2
-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협조요청 2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시행에 따른 신청자 모집 2

[주민생활지원부서]

- 복지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협조 3
- 장애인보조기기 편의설비 지원사업 안내 4
-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계층 안부확인 협조 4

[산업경제부서]

- 산불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5
-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협의회 운영 8

[민원부서]

- 지방세 체납자 납부독려 9
-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9

총 무 담 당

1 2022년 하동군 이장한마음대회 추진계획 알림

강세은(880-6303)

- (일 시) 2022. 11. 22.(화) 10:00 ~ 15:30 * 행사준비 : 09:00
- (장 소) 하동군 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450여명(이장, 담당공무원, 내빈 등)
- (주요내용) 개회식, 모범이장 표창, 화합한마당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09:00~09:45	45'	- 행사준비
	09:45~10:00	15'	- 식전공연
	10:00~10:50	50'	- 특강
개회식	11:00~11:05	5'	- 국민의례, 내빈소개
	11:05~11:25	20'	- 모범이장 표창 (도지사4, 군수 9, 농축협13)
	11:25~11:40	15'	- 대회사(이장협의회장) - 축 사(도 이장협의회 지부장) - 격려사(군수님) - 축 사(군의회 의장)
화합한마당	11:40~13:30	110'	- 오찬 및 명랑운동회 (종목: 제기차기, 윷놀이, 신발양궁, 환궁)
	13:30~15:00	90'	- 노래자랑
폐회식	15:00~15:20	20'	- 시상 및 경품
	15:20~15:30	10'	- 폐회(정리)

○ 화합한마당 참가자 추천

- 운동회(제기차기 1명/ 윷놀이 4명/ 신발양궁 1명/ 돼지몰이 1명)
- 노래자랑(1명)

2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범군민지원협의회 출범식 개최 강세은(880-6303)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에 대한 범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들의 자율적인 행사참여를 유도하고자 범군민지원협의회를 구성, 아래와 같이 출범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22. 11. 14(월) 14:00~15:30
- 장 소 :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석 자 : 마을이장 및 사회단체장 등
- 주요내용 : 출범 취지문 낭독, 위촉장 수여, 엑스포 추진방향 설명 등

3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 강세은(880-6303)

- 인구현황

구분	'21년말 기준(A)	증가 (B)	감소 (C)	증감 (B-C)	11. 6 현재 (A+B-C)	비고
인구수	1,710	106	146	△40	1,670	

※ 증가: 140명(전입101 출생4 재등록1) / 감소 : 146명(전출112 사망31 말소3)

- 협조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면민들이 전입신고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홍보
 -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내 실거주하나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녀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경우
 -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경우 등

4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시행에 따른 신청자 모집 강세은(880-6303)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스포츠참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대상자가 사업 참여에 제외됨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지원기간 : 2023년 1월 ~ 12월(전국 동시신청 2022. 11. 8. ~ 11. 22.)
 - 나. 지원내용 : 1인 월 9.5만원, 연 12개월 온·오프라인 수강료 지원
 - 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및 범죄 피해가구 내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기준 2005~2018년생)
 - 라.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svoucher.kspo.or.kr → 개인 이용권 신청)
 - 서면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 2022년 지원받은 이용자라도 다음 연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해야 함.

주민생활지원담당

1 복지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협조

박지윤(880-6328)

- 복지위기가구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질병, 실직, 소득감소 등)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대상 등
- 지원내용 : 방문상담 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부서(055-880-632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협조사항 : 복지위기가구 발굴, 신청

2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안내

박지윤(880-6328)

○ 사업개요

품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전동휠체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중 당해 연도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209천원 이내
전동스쿠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167천원 이내
전등리모컨	장애의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당해 연도에 전등리모컨을 구입한 사람 ※ 시설 입소자 및 장기입원 중인 환자 제외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	80천원 이내
화상전화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사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내 지원	146천원 이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후 면사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부서(055-880-6328)

3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계층 안부확인 협조

박지윤(880-6328)

○ 현황 : 1인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고독사' 증가

○ 확인대상 :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등 1인가구

○ 확인방법 : 유선 및 방문

○ 협조사항 : 정기적인 안부확인으로 마을돌봄 강화, 비상체계 유지

산업경제담당

1 산불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김정숙(880-6312)

- 위기유형 : 산불재난
- 내 용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발령일시 : 2022. 11. 1.(화) 09:00 (전국 발령)
- 우리면 산림보호법 위반 현황

위 반 일	위 치	원 인
'22. 10. 3.(월)	산 인접지 100m 이내	농산부산물 소각
'22. 10. 26.(수)		
'22. 11. 2.(수)		

- 유의사항 :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1차:30만원, 2차:40만원, 3차:50만원)
- 협조사항 : 산림, 산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홍보 및 산불예방 마을방송 매일 1회 이상 실시

- 붙임) 1. 마을방송(안) 1부
2. 산불관련 처벌규정 1부

<붙임1>

마 을 방 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불예방을 위하여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산불 없는 양보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 연접지의 논·밭두렁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둘째, 산림 내, 산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등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셋째, 산림 내 입산 시, 성냥이나ライター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만일, 산연접지나 산림 내에 불을 놓게 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발생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복)

<붙임2>

산불관련 처벌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5항제1호	10	10	10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3항제2호	30	40	50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 제3항제2호	10	20	30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1호	10	20	2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2호	10	20	20
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 제4항제3호	10	20	20

2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협의회 운영

임가현(880-6314)

- 교육목적: 읍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실시 및 자율적 참여 확대로 교육 효과 증대
- 교육협의회 구성: 29명
 - 위원장: 양보면장 - 위원: 전 마을이장 - 간사: 산업경제담당주사
- 협의사항
 - 2023년 우리면 새해농업인 교육과정 선정 ※ '22년도 교육과목: 콩
 - ※ 영농기술분야: 식량작물, 전작, 과수, 원예, 특·약용작물 등 특화된 품목기술 교육
 - 교육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등
- 읍면별 희망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과정

교육시기	교육내용	희망강사	교육장소	교육인원	비고

민원 담당

1 지방세 체납자 납부독려

윤미자(880-6322)

- 우리면 체납세 현황(2022. 11. 07. 현재) : 457건/ 36,231천원
- 협조사항
 - 체납고지서 반송 대상자, 연락처 누락자 등 체납자 실태조사 협조
 -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자동이체 신청 홍보

2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윤미자(880-6322)

-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결정 및 공시
 - 가격기준일 : 2022. 7. 1.
 - 결정·공시일 : 2022. 10. 31.
 -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
 - 공시대상 : 2022. 1. 1.~2022. 6. 30. 까지 토지이동(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
 - 열람방법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 ※ 하동군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가능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10. 31. ~ 11. 30.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서면)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24(www.gov.kr)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후 개별통지
- 홍보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붙임 : 방송안

홍보 방송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청에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가 대상입니다.

군에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어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